

의안번호	제 531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0년 10월 5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3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0년 10월 5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민간위탁 전 적정성 검토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,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조항 신설(안 제4조의2)
- 민간위탁 동의안(의회 제출) 세부 내용 명시(안 제5조의2)
- 수탁기관 모집 시 선정기준 및 배점 공개조항 신설(안 제6조제2항)
-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신설(안 제8조의3)
- 위탁사무 처리사항 감사 조항 신설(안 제15조의2) 등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및”을 “또는”으로, “주민”을 “도민”으로, “관계되지 않는 다음의”를 “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요청되는”을 “요구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요하는”을 “요구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.

4.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

제5조제1항 중 “제4조제1항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”를 “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”로, “위임 기관장”을 “위임사무 소관 기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민간위탁 동의안)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호는 시설위탁의 경우에 한정하며, 제9호는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에 한정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3. 위탁사무 내용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 및 위치도를 포함한다)
5. 위탁기간
6. 수탁자 선정 방식
7.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
8.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9.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
10.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, “선정하여야 한다”를 “선정하여야 하며,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,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 및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에서 제척된다”를 “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심의대상기관의 심의대상 안건”을 “심의대상 안건”으로, “직접 관여한”을 “관여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회피할 수 있다”를 “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위원의 해촉)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
2.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3. 위원이 사망·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4.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
5. 위원이 직무 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

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8조의3(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8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협약체결)”을 “(계약의 체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협약”을 “계약”으로, “협약내용”을 “계약내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협약”을 “계약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관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민간위탁의 목적

2.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

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4.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
5. 위탁기간
6. 수탁기관의 의무
7. 계약위반 시의 책임
8.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의 제목 “(재계약)”을 “(재계약·재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그 밖의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위탁협약사항”을 “위탁계약사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5조(지휘·감독)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 -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

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처리상황의 감사) ① 도지사는 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고,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별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민간위탁사무로 결정하거나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로 보되, 그 위탁 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종전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

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<u>요청되는</u> 사무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<u>요하는</u> 사무 4. <u>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</u> 5. <u>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</u> <u><신 설></u> 	<p>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-----<u>또는</u>----- ----- -----<u>도민</u>----- <u>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----- 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요구되는</u>----- 3. ----- <u>요구되는</u>----- 4. <u>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</u> <p><u><삭 제></u> 제4조의2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<u>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</u> 2. <u>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</u> 3. <u>경제적 효율성</u> 4. <u>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</u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<u>제4조 제1항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</u>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</u></p> <p>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.</p> <p>1.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,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</p>	<p><u>용 가능성</u></p> <p>5. <u>성과 측정의 용이성</u></p> <p>6. <u>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</u></p> <p>7. <u>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</u></p> <p>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----- <u>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</u>----- ----- -----<u>위임사무</u> <u>소관 기관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.</p> <p>1.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,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</p>

현행	개정안
<p>적 성격의 사무</p> <p>2. 청소, 경비, 방호,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<u><신 설></u></p> <p>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</p> <p>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</p>	<p>적 성격의 사무</p> <p>2. 청소, 경비, 방호,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5조의2(민간위탁 동의안)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호는 시설위탁의 경우에 한정하며, 제9호는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에 한정한다.</p> <p>1. <u>위탁사무명</u></p> <p>2. <u>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</u></p> <p>3. <u>위탁사무 내용</u></p> <p>4. <u>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 및 위치도를 포함한다)</u></p> <p>5. <u>위탁기간</u></p> <p>6. <u>수탁자 선정 방식</u></p> <p>7. <u>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</u></p> <p>8. <u>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</u></p> <p>9. <u>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</u></p> <p>10. <u>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</u></p> <p>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</p> <p>①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<u>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</u></p> <p>③ <u>신청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)</p> <p>① <u>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<u>심의에서 제척된다.</u></u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위원이 <u>심의대상기관의 심의</u></p>	<p>----- ----- -----<u>다</u> <u>음 각 호</u>----- -----<u>선정하여야 하며,</u> <u>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</u> <u>야 한다.</u>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,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</u></p> <p>③ <u>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 및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한다.</u></p> <p>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<u>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</u>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u>심의대상 안건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대상 안전과 관련하여 용역이 나 그 밖의 방법으로 <u>직접 관 여한</u> 경우</p> <p>3.~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<u>회피할 수 있 다.</u> <u><신설></u></p>	<p>----- -----<u>관여</u> <u>한</u>-----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u>회피(回避)하여야 한 다.</u></p> <p><u>제8조의2(위원의 해촉) ①</u> 도지사 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</u></p> <p>2. <u>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 고받은 경우</u></p> <p>3. <u>위원이 사망·질병 또는 장기 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려운 경우</u></p> <p>4. <u>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 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</u></p> <p>5. <u>위원이 직무태만, 품위손상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<신설></u></p>	<p>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제8조의3(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8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협약체결)</p> <p>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<u>협약</u>을 체결하여야 하며, <u>협약내용</u>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 다만, 도의 지도·감독을 받는 출자·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협약서에는 위탁받은 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액,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p>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<u>협약</u>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홈페이지와 공보에 실어야 한다.</p>	<p><u>지하여야 한다.</u> 제9조(계약의 체결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계약</u> ----- <u>계약내용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관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민간위탁의 목적</u> 2. <u>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</u> 3. <u>위탁사무 및 그 내용</u> 4. <u>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</u> 5. <u>위탁기간</u> 6. <u>수탁기관의 의무</u> 7. <u>계약위반 시의 책임</u> 8. <u>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p>③ ----- <u>계약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④~⑤ (생략) 제10조(재계약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,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.</p>	<p>④~⑤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재계약·재위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그 밖의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</p>
<p>제11조(수탁기관의 의무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,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지켜야 하며,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수탁기관의 의무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위탁계약사항----- ----- -----.</p>
<p>④~⑦ (생략) 제15조(지휘·감독)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.</p> <p>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</p>	<p>④~⑦ (현행과 같음) 제15조(지휘·감독)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</p>

현행	개정안
<p>있다.</p> <p>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취소·정지·시정 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알리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 <p>④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제17조(성과평가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</p> <p>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 <p>제15조의2(처리상황의 감사) ① 도지사는 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고, 수탁기관에게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제17조(성과평가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p>

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3조(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·인가·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,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(이하 "행정권한"이라 한다)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, 다른 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,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,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)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,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휘·감독)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·감독하고,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제7조(사전승인 등의 제한)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8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)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,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.

제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)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.

제10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

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"민간수탁기관"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3조(계약의 체결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,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, 위탁기간, 민간수탁기관의 의무,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14조(지휘·감독)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

민간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5조(사무편람)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,

처리기간, 처리절차, 처리기준, 구비서류,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

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6조(처리 상황의 감사)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,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.